

#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0.01.27.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01.12.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0.01.14.
- 다. 상정일자 : 제150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2010.01.27)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조 용 순 환경과장

#### 가. 제안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적용대상 기관(안 제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된 공단, 그 밖의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2)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 개발 및 판매 지원
-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 그 밖에 구민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등

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매의무 범위를 정함

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품목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함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3)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의 촉진(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가)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친환경상품 생산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상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소비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다음과 같다”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에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마포구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안 제5조제1항을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12조제1항에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법인, 종교·체육시설, 산업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안 제3조제4호 중 친환경상품의 의무 구매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구에서 출연한 기관이 중복 규정된바, 안 제12조제1항 중 “구에서 출연한 기관”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판단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